

제안요청서

사업명	2024년 공간정보 국가표준화 연구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기관	부서	성명	TEL	FAX
담당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안종태 서기관	044-201-3471	044-201-5540

목 차

I. 사업개요

- 1. 사업요약 1
- 2. 추진배경 및 목적 1
- 3. 주요연구내용 2

II. 과업지시서

- 1. 일반지침 4
- 2. 세부지침 5
- 3.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7

III.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1. 제안서 작성 지침 11
- 2. 제안서 작성 요령 11
- 3. 제안서 제출 방법 13

IV. 제안서 평가

- 1. 입찰 참가자격 14
- 2.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15
- 3.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18
- 4. 입찰시 유의사항 18

-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19

I. 사업개요

1. 사업요약

- 사업명 : 2024년 공간정보 국가표준화 연구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210일)
- 사업비 : 1억 원(부가세 포함)

2. 추진배경 및 목적

1) 추진배경

- 디지털 트윈, 인공위성,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에 대한 공간정보 표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표준과 기술기준 간의 불일치 등으로 공간정보의 공유 및 활용에 문제 발생
- 이에, 미래 핵심기술에 대한 상호운용성 확보, 의사소통 체계 확립, 기술 간 융·복합 촉진 등을 위하여 공간정보 국가표준화 추진체계 마련 필요
- 특히, 국내 위성영상 구축 기관별 저장·공유 및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위성영상에 대한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표준 개발에 대한 수요 증대
- 이에, 국내 위성영상 기술의 국제표준 적용 및 해외시장 진출 여건 마련 및 공간정보 기술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간정보 분야 국제표준화 단계별 추진 전략 마련에 대한 연구 필요

2) 목적

- 위성영상 관련 표준 현황 분석·조사 등을 통한 국내 위성영상 관련 국가표준(안) 개발 및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전략 마련

3. 주요 연구내용

1) 국내외 위성영상 관련 표준 현황 조사·분석

- 국내 위성영상 활용 기술의 국가표준 개발과 국제표준의 단계별 적용을 위한 실태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 국내 공간정보 분야 위성 관련 표준 환경변화 조사 및 분석
 - 위성영상 공동 활용을 위해 항우연 및 국내 위성센터 등 국제표준 적용 실태 조사·분석 및 국가표준화 대상 선별 및 시사점* 도출
 - * 사용자를 위한 표준 적용 서비스 현황 조사·분석, 위성관련 기관별 자체 규정 및 표준개발 계획 등을 조사하여 국토부의 위성영상 표준 활용 전략 도출
- 미국 등 위성 선진국의 국제표준 개발 현황·계획 조사 및 분석
 - NASA 등 국외 위성영상 구축 및 활용기관의 표준기술 검토 및 국내 적용 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국가표준화 방향 설정
 - * 위성 관련 공간정보 국제·국가표준 개발을 위해 국내외 위성 관련 표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심층 인터뷰 실시

2) 국내 위성영상의 메타데이터 국가표준(안) 개발

- 국내 위성영상의 활용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국제표준 기반의 메타데이터 국가표준(안) 개발
 - 국내 위성영상 생산, 가공, 유통 등 각 단계에서 모두 적용·활용* 가능한 메타데이터 국가표준(안)** 개발
 - * 항우연 등 국내 위성영상 기관 및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 ** 표준영상, 중간 산출물, 최종 영상가공물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발
 - FAIR 원칙*을 기반으로 국내 위성영상의 탐색, 접근, 상호운용성, 재사용성이 가능하도록 메타데이터 국가표준(안) 마련
 - * 데이터를 찾을 수 있고(Findable), 접근 가능하며(Accessible), 상호운용성이 확보되고

(Interoperable), 재사용하기(Reusable) 위한 일련의 지침으로 EU를 비롯한 다양한 조직에서 디지털 자산의 재사용성을 확대하고 데이터 생태계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적용

3) 국내 위성영상 관련 용어 국가표준(안) 개발

- 위성영상 활용기관 간 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위성영상 관련 용어의 공간정보 국가표준(안) 개발
 - 위성영상 활용 관련 용어의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국가표준 용어의 정의 개정 및 추가 발굴 용어에 대한 국가표준(안)* 마련
 - * 위성영상 관련 용어의 공간정보 국가표준화를 통해 국내 위성활용 기관간 위성데이터의 공유 및 사용자가 위성정보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준 개발
 - 국내 위성 관련 용어 국가표준의 국제표준화를 고려하여 영문 정의를 포함한 국제표준(안) 개발

4)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마련

- 국내 위성영상 관련 국토교통 R&D 성과 등을 활용한 국제표준화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국제표준화 등 대응방안 제시
 - 국내외 표준화 기구 및 사용자 친화형 데이터*(ARD) 관련 기관 등에서 추진중인 표준현황 분석 및 국제표준화 방안 제시
 - * 'ARD(Analysis Ready Data)'는 고해상도 위성영상 사용자 친화형 데이터로 사용자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즉시 분석가능하고 타 자료와 시계열적으로 상호운용 가능한 형태로 최소한의 요구조건 내에서 처리된 자료

II. 과업지시서

1. 일반지침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따라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한다.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 일정계획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추진 상황 및 금월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및 보고계획에 따라 발주처에 성과품을 제출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 투입인원 등은 실제 사업시행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처로부터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사업수행계획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세부지침

1)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수행 인력의 운용

-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시킨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연구 결과물의 표현방식(presentation)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활용의 효율성과 실무적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 각 공정별 생산되는 성과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하고, 제반 변동사항을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책임자는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과업책임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업수행자는 지급받은 사업비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작업보고

- 작업진도보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달 5일까지 감독관을 통하여 발주처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책임자는 각 공정별 공정의 시작과 완료 및 작업의 진행사항 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동 과업의 착수, 중간 및 준공 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업 중에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때마다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4) 용역비 조정

- 용역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등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문위원 및 표준적용 평가위원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자문회의 등을 3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6)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소유권 등의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모든 권리는 지적재산권도 포함한다.
-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를 준용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가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과업 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7)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
-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요구할 수 있다.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납품성과물

- 연구보고서 1식(인쇄 100부)

3) 예정공정표

구 분	M	M+1	M+2	M+3	M+4	M+5	M+6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위성영상 관련 표준 현황 조사·분석							
<input type="checkbox"/> 국내 위성영상의 메타데이터 국가표준(안) 개발							
<input type="checkbox"/> 국내 위성영상 관련 용어 국가표준(안) 개발							
<input type="checkbox"/>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마련							
<input type="checkbox"/> 최종 성과품 제출 ○ 성과보고	착수			중간			최종

* 발주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세부일정 변동 가능

4) 보안대책

-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보안성 검토에 응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과업내용 관련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대해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라 과업감독관은 과업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 과업 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장소를 별도로 구분하고,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원에게 한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참여자 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관리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 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여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도에 따라 회수·파기하여야 하며, 외부발간물의 불량·과지 등은 소각하여야 한다.
-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및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별첨 1)을 이행한다.
- 누출금지대상정보(별표 1)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부정당업체로 등록된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발주처의 검토 이후 전부 납품및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하고 원지·폐지(불량·파지) 등을 완전 회수, 소각 및 파기하여야 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과업 완료 후 성과품 배부 및 보관 시에는 반드시 사본 번호를 부여한다.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양식에 의하여 정확·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hwp)로 작성하되 PDF로 변환하여 제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 등 제출자료는 온라인(e발주시스템)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단, 발주자가 평가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료는 제안 당시의 내역으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의 내용에 “ ~할 수 있다” 또는 “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판단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구성

구 분	작 성 지 침	비 고
1. 표지	○ 과업제안서	서식 제1호
2. 제안서 내용	○ 제안서 개요(배경 및 목적 등) ○ 과업접근방식, 과업수행계획,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연구조직 구성 등	
3. 일반현황	○ 업체(기관) 일반현황	서식 제2호
	○ 인력 투입현황	서식 제3호
	○ 참여 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4호
4. 별첨자료	○ 각종 서약서 ○ 증빙자료	서식 제5호~제6호 등

2) 제안 유의사항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제안 관련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기타 용역입찰 공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제출 방법

○ 일 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장 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파일, 온라인 제출)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 기타 입찰공고로서 정한 서류 일체

○ 제출방법은 입찰공고서 참조

○ 문의사항 연락처

- 담당자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안종태 서기관

- 전 화 : 044-201-3471, jtan1969@korea.kr

IV. 제안서 평가

1. 입찰 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등록한자, 비영리법인 참여가능
-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1억원 미만인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단,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 원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함
- 협상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설명회 : 별도 실시하지 않음(제안 요청서로 같음)

○ 제안 발표

- 일시 및 장소 : 개별 통보
-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시간은 참가업체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와 동일
- 발표자 : 당해 용역 사업책임기술자(PM)
* 발표자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및 제출
- 제안발표 참석인원 : 총 3인 이내(발표자 포함)
- 제안 발표사는 제안발표를 위한 노트북 컴퓨터 등을 별도로 준비

○ 평가점수 배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85점 + 가격평가 15점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7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85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다만, 최상 및 최하위 동일 점수가 2개 이상 나올 경우 1개만 배제하고, 산술평균시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가격평가 방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가격평가

○ 협상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장 높은 1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에는 차(次) 순위자와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 추진
- 기술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85점)의 85%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 낙찰자 통보

- 협상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유선통보 함

○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 제안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안 설명을 요구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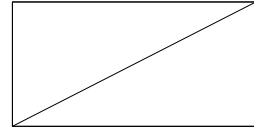
3.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수행능력평가 (85)	인력·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조직 체계의 적절성, 참여인원의 자질 (경력, 자격증 등)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및 방법의 적절성 	10	비계량
	기술·지식 능력 (과업 접근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25	비계량
	사업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기간설정의 적정성, 추진일정의 타당성 ○ 연구용역 추진 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15	비계량
	예상 성과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물과 전체내용의 적절성 및 정책적 시사점 ○ 연구 성과물 활용도 	20	비계량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15	비계량
입찰가격평가(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15	

4. 입찰시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서식 제1호】



과업제안서

용역명 : 2024년 공간정보 국가표준화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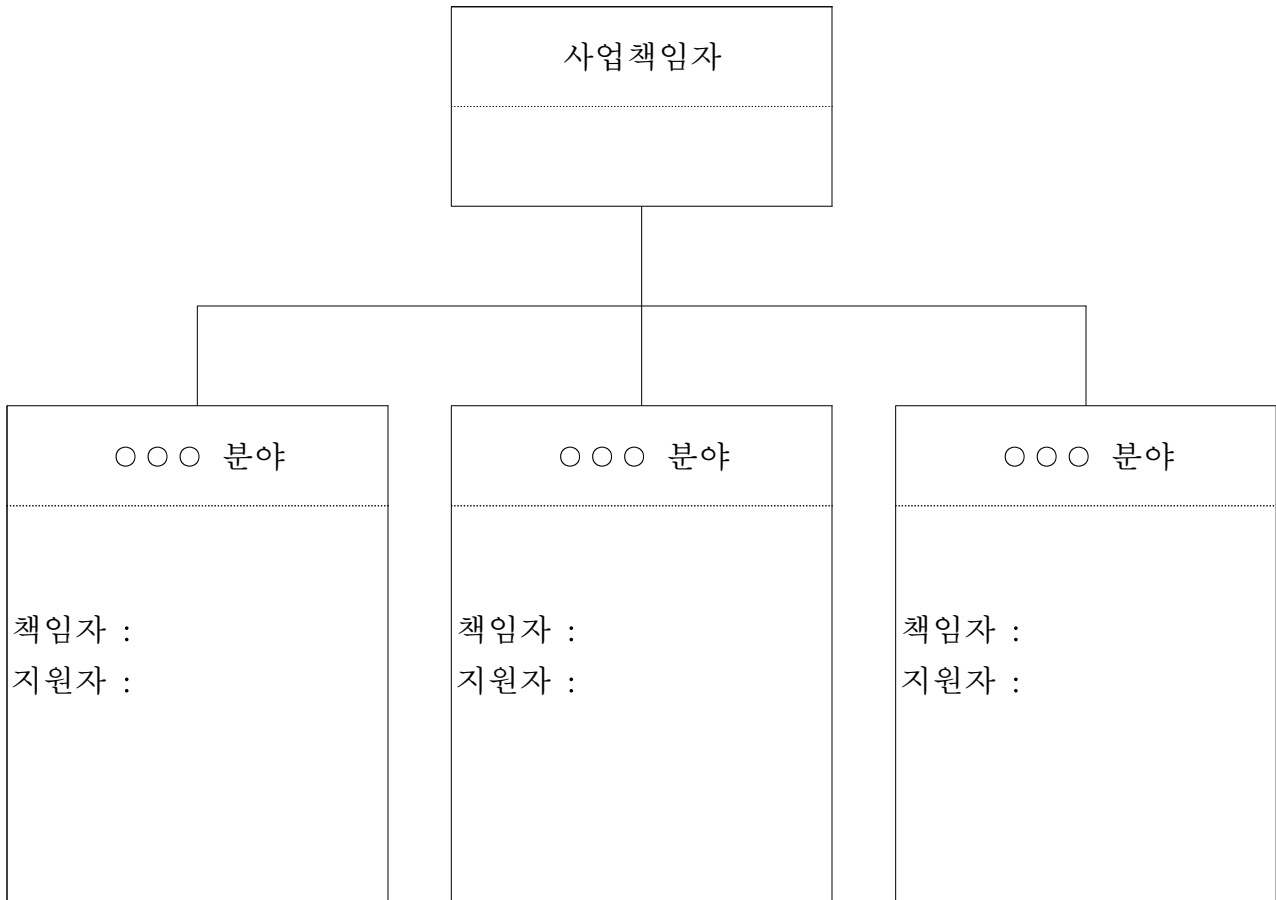
업체명 : (인)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분야			
4. 주 소			
5.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예산규모	2021년	2022년	2023년
9. 상시 종업원수			

※ 입찰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인력 투입현황



※ 조직구성 계획에 맞추어 편집 가능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령	학위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학위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업명(논문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1. 용역참여예정자는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서를 첨부
2. 주요경력은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고,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할 것, 또한 사업 발주청의 실적확인서 또는 협회 등의 경력증명서를 첨부

보안서약서

1. 서약자

- 회사명 :
- 소재지 :
- 직책(직위) :
- 성명 :

2. 내용

본인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2024년 공간정보 국가표준화 연구』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 사업에서 습득한 **국토교통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 및 본사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위 서약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양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았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 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음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